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현황 및 실천과제

지난 11월 1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회의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보고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소개한다.

1. 연.기금의 자금운용 개선

이중 5조6천억원 정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금융기관에 4조3천억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다.

1. 기금운용 현황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총 73개(총 7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미조성)로서 그
운용규모는 64조5천억원('96년 계획기준)에 달한다.
국민연금기금 등 32개 공공기금의 운용규모가 46조원
으로 전체기금의 약 70% 차지하고 있고,

〈여유자금 운용현황('96 계획)〉

(단위 : 억원, %)

	기 금 수	자 금 운 용				계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기 금 예 탁	채 권 등	
공공기금	32	8,039	1,994	53,865	29,703	93,601
사업성기금	28	6,551	1,103	3,600	1,725	12,979
적립성	4	1,488	891	50,265	27,978	80,622
기타적금	41	20,439	12,719	2,558	30,977	66,693
사업성기금	32	14,379	1,036	657	2,096	18,168
적립성	9	6,060	11,683	1,901	28,881	48,525
합계	73	28,478	14,713	56,423	60,680	160,294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

	운용규모('96 계획)	구성비	비고
공공기금*	459,520	71.2	32개
기타기금	185,816	28.8	41개
계	645,336	100.0	73개

주) * 기금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한 기금

자료) '97년도 정부기금운용 계획서, '96 기금백서(재경원)

기금의 사업비, 차입금상환, 기금관리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약 16조원 정도('96년 계획기준)이며,

자료) '96 기금백서(재경원)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상 문제점

기금의 여유자금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남
은 순수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금
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리입찰을 함으로써

수신금리가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여신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나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에 있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어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제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변칙적으로 확정금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전수익을 제시 또는 수익률 이면계약 등의 편법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자금조달에 애로점을 나타내고 있다.

'95말 기준으로 기금의 총자산대비 주식투자비중이 1.6%로 영국(80%), 미국(48%), 일본(26%) 등의 주요 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금의 총 상장주식대비 주식보유 비중이 12%로 미국(25.7%), 일본(42%)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3. 금리입찰방지 방안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하여 '96.11월중에 기금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개선(기금운용지침 제정)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의 정책목표 및 기금설립 목적에 맞는 금융기관 선정하여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수의(5개 또는 10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과열경쟁에 의한 금리상승을 억제한다.

이에 기금설립목적 또는 각 금융기관의 생산성 증대 운동.대출금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예치하게 하고,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실적,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대출지원실적 등을 평가하여 배분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담은행에(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에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치한다.

금융기관 예치시 연평균 운용수익률을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치금리(현 10.37%) 수준으로 운용토록 유도하고, 위규.편법 금융거래 금지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이면계약 금지 및 Fax, PC통신 등을 통한 소위 "금리입찰" 금지시킬 계획이다.

주식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투자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침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지침에 위반할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흡수할 것이다.

II. 위임.위탁규제 사무의 정비

1. 추진경위

지난 10월 9일 발표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위임.위탁사무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 철폐기로 결정하였다.

경제부처의 자치단체 위임 및 관련협회 위탁사무 총 1,476건중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427건을 우선 정비대상사무로 선정하고, 특히 개선여지가 많은 9개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설업법, 전기통신공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집중.검토하였다.

검토는 다음 기준에 따라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
- 다중적 규제는 필수적인 규제만 남기고 단일화
- 실효성제고 차원에서 업계 자율실시 사항으로 전환
- 수년간 처리건수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사무는 폐지
-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무는 실절검토 가능기관으로

이관

o 부분위임된 업무는 전체를 이양하거나 폐지

2.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그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총 123건의 위임·위탁사무를 폐지하는 등 총 191건의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부처별 개선유형별 개선 건수〉

(단위 : 건수)

부 처	우선검토 대상사무	개선 대상사무					계
		폐지	이양	회수	기타	계	
재경원	3	1				1	
농림원	45	2	8	3	7	20	
통상부	153	59	5	1	19	84	
정통부	7	3			3	6	
환경부	62	20			8	28	
복지부	4					0	
노동부	34	8			6	14	
건교부	116	28			8	36	
과기처	3	2				2	
계	427	123	13	4	51	191	

상기 확정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련법령 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개선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킬 것이다.

3.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

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유지하고,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별종공사업

제도를 공사업자간의 경쟁촉진을 위해 폐지하되 일반 공사업(2등급)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일반공사업으로 흡수하는 등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이에 완화된 기준에 미달하는 별종공사업체는 1년의 경과규정을 두어 기준을 충족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공사업도 등록제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도급한도제 또는 수급한도제는 업체의 능력(공사실적 및 자본금)에 맞는 적정시공을 위한 제도이나 정해진 도급한도액 및 수급한도액으로 인하여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켜 왔으므로 이에따라 동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업체의 공사실적 또는 자본금 등이 공개되는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하여 공사 발주자에게 업체 선정 기준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변동내역을 신고받아 이를 점수로 산정하거나 또는 시공적정액을 건설수첩 등에 공개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체 선정기준으로 공시된 업체의 점수 또는 시공적정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② 다중적 규제는 필수적인 규제만 남기고 폐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된 일반화물터미널 설치·운영등록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사시행인가시 제반사항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창고업 등록제도도 건축허가시 제반사항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폐지한다.

또 시·도에 위임된 환경공동방지사설 설치(변경)승인 및 자가방지사설 설계승인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에 일괄 검토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는 한편 공정한전보고서로 갈음한다.

③ 실효성제고 차원에서 업계자를 실시사항으로 전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협회, 산업보건협회,

산업간호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책임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련공단에 위탁된 사업장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자체 검사원에 대한 의무직무교육제도를 폐지(양성교육은 존치)한다.

또한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기기술자 의무보수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거 한국통신공사협회 산하 통신기술훈련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통신기술자격자 의무보수교육제도도 폐지한다.

그러나 이들 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자율수강토록 하고 필요시 수강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④ 운용실적이 거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승인제도를 '97.7.1까지 폐지하고 관세환급특별법에 흡수시키고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위탁된 디자인보호대상 물품의 지정신청수리, 지정물품의 지정 및 공고, 지정취소 및 공고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수출품중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동 제도는 현재까지 지정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향후 저작권법, 의장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시킬 것이다.

한편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

⑤ 일부 위임된 업무 자체를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산림내에서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초지조성지구에서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허가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또한 임산물의 유통선진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품질표시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공유림·사유림안의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변경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성하는 한편 계량기의 제작업등록 및 등록의 취소·사업의 정지처분, 계량기의 처분신고 등 현행 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⑥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할을 중앙부처로 회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중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시설과 특정유해물질 처리시설 설치업무는 관할을 시·군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고, 농약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재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한 위임업무를 제조업등록관리인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한다.

⑦ 기타 기업활동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배출시설 신고업무는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토록하여 절차 간소화하고, 환경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환경관리인 임명신고 등 절차적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사업장이전 명령제, 배출(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환경관리인 변경명령 등 사업의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행정명령제도를 폐지한다.

또 관세법에 의해 설영인에게 위탁된 보세운송 도착 보고를 보세구역 설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하여 보세 물품 발송·도착절차에 대한 각종 보고 사항도 간소화한다.

(단위 : 건)

	접수건수	처리실적
1994	1,783,150	1,783,150
1995	1,914,399	1,914,39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법에 의거 현재 건설업자가 주기적으로 관공서에서 면허를 갱신 받던 제도를 앞으로는 면허기간 종료후 면허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갱신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Ⅲ. 법정의무고용제의 개선

1. 법정의무고용제도 현황

현재 23개 법률에 의거 29개 분야에서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유자격자 고용을 개별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법정의무고용제를 운영중이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관리자)고 되어 있다.

이 법정의무고용제 대상분야를 보면,

▲ 안전분야 :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LPG(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광산보안관리담당자, 화약류 보안책임자(제조, 관리), 방화관리자, 유독물관리자 등 14 분야

▲ 환경 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인 3 분야

▲ 위생 분야 :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세척제 위생관리인 등 4분야

▲ 사회정책 분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분야

▲ 교통안전 분야 : 안전운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여객, 화물운송) 등 2분야

▲ 품질·에너지관리 분야 : 품질관리담당자,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등 4분야 등이다.

이러한 과도한 의무고용제는 우리 기업에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무고용제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우리 기업의 의무고용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명, %)

	A 사	B 사	C 사	D 사
업 종	수소, 질소 제조	자동차 부품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식품 제조, 판매
종업원수(A)	150	337	1,560	2,263
의무고용인원(B)	24	55	81	231
비중(B/A)	16	16.3	5.2	10.2

주) A사는 노동부 자료이며 나머지는 무역협회 조사자료임.

'95년말 현재 우리의 경우 약 43만여명의 의무고용대상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되어 있다.

2.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10.9 대책)" 중 관련내용

의무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이에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공단지역내 풀(pool)제 또는 전문대행인 활용을 확대하고 사회정책적인 목적(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이나 안전과 관련된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의무고용만을 기업에게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해당분야의 유자격자를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고용하는 체제로 이행할 방침이다.

3. 개선방안

(1) 자율고용 대상분야(13개 분야)

안전, 사회정책 및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적절한 보완대책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으로 전환한다.

대상분야는 사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담당자,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세척제 위생관리인, 교통안전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관리자, 소음·진동환경관리인 등이며, 다만, 인체에 위해가 큰 복요리업에 한해 조리사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수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여객운송업에 한해 교통안전관리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영양사제도의 경우도 식품위생법외에 학교급식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정책적 차원의 의무고용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자율고용제 전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실시하고, 국가자격증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자격자를 고용토록 유도한다.

또한 종업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재 의무고용자가 담당하는 법정임무와 의무를 수행토록 한다.

(2) 의무고용부담 완화분야(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

▲법정 고용인원을 축소하여 기업의 과중한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현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동시에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원에 대한 고용의무를 폐지한다.

LPG 안전관리자의 경우 현재 1인 이상 고용토록 되어 있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현재 일정기

준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 등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위험물시설안전원(1인) 고용의무를 폐지한다.

또한 광산보안관리자는 현재 6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토록 되어 있는 부보안관리자(1인)의 고용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과도한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고용인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화학류보안책임자의 경우 종업원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용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예시 : 제조분야의 경우 5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고용 --> 100인 초과시 1인 추가고용)한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경우에는 소형기기 등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장내 구역별로 1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는 고용의무를 사업장별로 1인만 고용토록 완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경우 법정고용인원을 축소(예시 : 규모에 따라 1-4인 --> 1-2인)한다.

▲의무고용 면제대상 사업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고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기준(종업원수, 생산용량 등)을 완화하여 면제대상 사업장범위를 확대한다. 예를들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장이 현재 전기수용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이나, 이를 200kw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대상분야는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다.

▲공동채용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동일분야 의무고용자에 대한 공동채용을 허용하거나 현재 허용되고 있는 공동채용 인건범위를 확대한다. 예를들면 동일 공단내 인접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각각 고용해야 하나, 제도 개선으로 몇개 이내의 업체들간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상분야는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보건관리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환경관리인은 공

동채용범위를 확대) 등이다.

▲상호겸직 인정범위를 확대하기위해서 한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면 다른 분야의 의무고용자에 대한 채용의무를 면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산업안전관리자 이외의 안전분야에서 의무고용자를 채용할 경우 산업안전관리자에 대한 채용의무를 면제한다. 예를들면 현재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채용하더라도 산업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나, 제도개선시 산업안전관리자 고용의무가 면제된다. 대상분야는 고압가스·도시가스·LPG·전기·위험물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광산보안관리자, 화약류보안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 등이며, 이들중 1분야에서 의무고용할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채용의무가 면제(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이 폐지되는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채용의무를 계속 면제)된다.

또한 현재 유사분야간에 사업종류나 중소기업여부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상호겸직 범위를 확대하여 주된 영업분야에서 의무고용할 경우 나머지분야 채용의무를 면제한다. 대상분야는 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 등으로 예를들면 현재는 중소기업에 한해 유독물관리자 고용시 산업안전관리자 고용이 면제되었으나, 제도개선시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화약류제조·저장이나 광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보안책임자와 광산보안관리 담당자중 하나를 의무고용하면 나머지 안전분야 의무고용자 채용의무를 면제한다.

또 대기환경관리인과 수질환경관리인간에 상호겸직을 허용하여 2개 분야 환경관리인중 1개 분야만 선임하면 나머지분야에 대한 의무고용은 면제해 주고, 대기환경관리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에 대한 의무고용을 면제한다.

▲외부대행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외부대행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외부대행기관의 유자격자가 주기적으로 일정기간

근무후 안전관련 상황을 당해 사업장 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대상분야는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화약류보안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 등이다.

(3) 현행제도 유지분야(2개 분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4. 추진계획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되는 23개 법률을 개정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 아니라 세부 시행방안을 통일적인 기준하에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여 '97년부터 시행한다.

<참고 표 다음페이지에>

IV.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

자본재구입용 상업차관 허용하기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운용하고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 등 기업의 직접조달을 확대한다.

또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산기계를 50% 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직접차입을 허용('97.11 시행)하고 '97년중 20억불 수준에서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기업은 재무구조국산기계 사용비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97년중 10억불 범위내에서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의무공용제 개선 효과 추정〉

	현행 (A)	개선 (B)	감소 (A-B)
위생	2	0	2
• 영양사	1	-	1
• 조리사	1	-	1
품질·에너지관리	1	0	1
• 열·연료관리자	1	-	1
환경	3	1	2
• 대기오염	1	4-5중 1인	1
• 수질오염	1	4-5중 1인	-
• 소음·진동	1	-	1
산업안전	18	9	9
• 보건관리자	1	1	0
• 산업보건의	1	-	1
• 산업안전관리자	1	9-14중 1인	7
• 전기안전관리자	1	-	-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3	-	-
• 방화관리자	1	-	-
• 유독물관리자	1	-	-
• 위험물안전관리자	1	-	-
• 위험물시설안전원	1	-	1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6	6	0
• 고압가스안전관리원	1	1	0
계	24	10	14

주) 구체적인 취급물질, 시설용량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직 허용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고용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의무고용제 개선방안〉

근거법률	개선방안
▲위생 -조리사(식품위생법 제34조) -영양사(식품위생법 제35조) -식품위생관리인(식품위생법 제28조) -세척제위생관리인(공중위생법 제19조)	* 개정안 변경 : 현행유지
▲교통관리 -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제7조) -안전운전관리자(도로교통안전법 제45조)	
▲품질·에너지관리 -품질관리담당자(산업표준화법 제37조) -계량기사(계량 및 측정에 관한법률 제46조)	자율고용으로 전환 여객운송분야는 유지 자율고용으로 전환

근거법률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연료관리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 -전기에너지관리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 ▲환경 -대기환경관리인(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수질환경관리인(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환경관리인(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안전 -산업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사업법 제45조) -고압가스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LPG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 -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법 제20조)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8조) -검사대상기조종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 -광산보안관리자(광산보안법 제13조) -화약류보안책임자(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7조) -방화관리자(소방법 제9조) -유독물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회정책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p>공동채용범위 확대,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확대 공동채용범위 확대,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확대 자율고용으로 전환</p> <p>인원축소,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용 허용,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확대 인원축소,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용 허용,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확대 상호검직 확대 상호검직 확대 인원축소, 상호검직 확대 인원축소, 공동채용 허용,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허용 자율고용으로 전환 인원축소, 공동채용 허용,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허용 인원축소, 상호검직 확대 인원축소,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허용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용 허용,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확대 공동채용 허용,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허용 인원축소, 면제범위 확대, 공동채용 허용, 상호검직 확대, 외부대행 확대 자율고용으로 전환 현행유지</p>

등은 종전대로 상업차관을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SOC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간 5억불 수준의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97.11 시행)하고, 이는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를 대상으로하는 한편 산업단지분양가 인하,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산구입용 상업차관 허용방안을 보면, 우선 금

용기관을 통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운용하고 상업차관 등 기업의 해외자금 직접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산기계를 일정비율 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국산기계구입용 해외직접차입을 허용한다. 그 허용대상은 국산 자본재를 사용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국내기업으로서 국산자본재 사용비율(가액기준)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품목(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과 동일)은 국산화율 50% 이상인 기계설비류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한 기계설비류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중 기계설비류이다.

또 차입방법은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으로 하고 도입한도는 '97년중 20억불, 도입조건은 차입금리의 상한 제한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Libor(런던은행간 금리) + 2% 이내, 대기업은 Libor + 1% 이내이며, 현행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도입조건과 동일하다. 차입비율은 국산기계구입 총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100% 이내, 대기업은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사후관리는 지정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에 예치하는 것으로 자금의 인출은 기계구입 시점에 지정외국환은행에서 기계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업별 배분방식은 반기별로 차입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차입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차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 국내금융기관, 차입의존도, 국내 증시 직접자금조달 의존도, 국산기계 사용비율, 차입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정하는 한편 차관도입 인가는 산업은행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차입자요건 충족 확인기관은 국산기계 여부(국산화율 50% 이상)의 경우 기계공업진흥회, 그리고 국산기계 사용비율(50% 이상)의 경우 통상산업부가하고, 이는 1997.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그 허용대상은 중소기업,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자,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도입용도는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도입으로하고 '97년중 10억불로 도입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도입조건은 Libor(런던은행간 금리) + 1% 이내로 한다.

차입비율은 시설재도입자금의 70%(중소기업의 경우는 100%)이며, 기업별 배분방식은 재무구조, 차입규모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을 조정한다. 이에 차관도입 인가는 산업은행에 위임하였으며, 1997.1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 등 해외차입을 허용하는데 그 허용대상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며, 허용요건은 해외차관(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원리금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와 재무비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전년도의 자체재원(지방세 및 경상세의 수입) 징수실적이 전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로 한다.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건설사업중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이며, 지방자치단체당 1개 사업을 원칙(해당사업 종료후 다른사업 신청 가능)으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차입을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대 가능하다.

그 허용한도는 연간 5억불 수준으로 규제완화,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차입방법은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발행으로 하며, 차입금리는 Libor(런던은행간 금리) + 1% 이내이다.

이에 매년초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개요,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입계획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주무부처 및 내부부의 의견 첨부)신청하고, 재정경제원은 차입계획서를 검토하여 인가대상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시행은 '97.1월부터로 '97년 1/4분기중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